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 리 규 정**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조장수당 및 운전수당은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5] (제45조 관련)

경륜사업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임금표

(단위: 원)

분류/호봉	1호봉	2호봉	3호봉	4호봉	5호봉	6호봉	7호봉	8호봉	9호봉	10호봉
관리원	89,100	89,600	90,100	90,600	91,100	91,600	92,100	92,600	93,100	93,600
수납원	62,800	63,300	63,800	64,300	64,800	65,300	65,800	66,300	66,800	67,300
발매원, 운영보조원	60,400	60,900	61,400	61,900	62,400	62,900	63,400	63,900	64,400	64,900
안전원	98,000	98,600	99,200	99,800	100,400	101,000	101,600	102,200	102,800	103,400
전산관리보조원	92,100	92,600	93,100	93,600	94,100	94,600	95,100	95,600	96,100	96,600
통신보조원	83,000	83,500	84,000	84,500	85,000	85,500	86,000	86,500	87,000	87,500
조리사/영양사	66,000	66,500	67,000	67,500	68,000	68,500	69,000	69,500	70,000	70,500
조리원	60,500	61,000	61,500	62,000	62,500	63,000	63,500	64,000	64,500	65,000
장비·시설관리원 경륜심판원	79,900	80,500	81,100	81,700	82,300	82,900	83,500	84,100	84,700	85,300

비고

1. 중(석)식 보조비: 6,000원, 교통비: 6,000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2. 호봉기준은 최고10호봉으로 하고, 장기근속기간에 따라 장기근속가산금을 지급한다.
(6~10년차: 1일 1,000원, 11~15년차: 1일 2,000원, 16년차 이상: 1일 4,000원)

[별표 5의2] (제45조 관련)

공영자전거사업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임금표

(단위: 원)

분류/호봉	1호봉	2호봉	3호봉	4호봉	5호봉	6호봉	7호봉	8호봉	9호봉	10호봉
시스템관리원	67,000	67,500	68,000	68,500	69,000	69,500	70,000	70,500	71,000	71,500
배송(운전)·정비원	67,000	67,500	68,000	68,500	69,000	69,500	70,000	70,500	71,000	71,500
배송(운전)·정비보조원	61,500	62,000	62,500	63,000	63,500	64,000	64,500	65,000	65,500	66,000
상담원	60,400	60,900	61,400	61,900	62,400	62,900	63,400	63,900	64,400	64,900
정산원	61,500	62,000	62,500	63,000	63,500	64,000	64,500	65,000	65,500	66,000
교육강사	99,300	99,800	100,300	100,800	101,300	101,800	102,300	102,800	103,300	103,800
교육강사보조	60,400	60,900	61,400	61,900	62,400	62,900	63,400	63,900	64,400	64,900

비고

1. 중(석)식 보조비: 6,000원, 교통비: 6,000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2. 호봉기준은 최고10호봉으로 하고, 장기근속기간에 따라 장기근속가산금을 지급한다.
(6~10년차: 1일 1,000원, 11~15년차: 1일 2,000원, 16년차 이상: 1일 4,000원)

[별표 6] (제45조 관련)

경륜 및 공영자전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수당지급기준

구분	대상	지급기준	비고
연차수당	소정근로일 80% 근무자	• 가×연차일수×소정근로시간/40	공통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 가×개근월수×소정근로시간/40	공통
주휴수당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는 1일의 주휴수당 발생	• 가×소정근로시간/40	공통
출납수당	수납원, 회계업무수행자	• 월 20,000원	공통
심판수당	심판(검차포함)업무 자격증 소지자	• 월 80,000원	경륜
자격증수당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서 진산·방송·시설관련 해당분야 근무자	• 보수규정 별표7의 기술업무수당 준용	경륜 주4일, 주5일근무자
야간근무 수당	22시부터 익일6시까지 근무자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함)	• (가/8)×1.5×야간근무시간	공통
시간외근무 수당	규정된 근무시간외 초과근무 직원(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함)	• (가/8)×1.5×시간외근무시간	공통
휴일근무 수당	휴일에 근무한 직원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함)	• (가/8)×1.5×휴일근무시간	공통
위험수당	조리사, 조리원	• 월 20,000원	경륜
조장수당	시스템관리원, 배송원, 정비원 중 조장으로 지정된 자	• 월 80,000원	공영 자전거
정비(기술) 수당	정비원	• 월 20,000원	공영 자전거
운전수당	시스템관리원, 배송원	• 월 20,000원 • 월 40,000원: 특장차량	공영 자전거

비고

1. 제 수당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2. 연차수당, 주휴수당 및 야간·시간외·휴일근무수당의 지급기준란에서 “가”는 일급, 급식보조비, 교통비를 합산한 금액, “40”은 근로자의 1주 법정 근로시간을 말한다.